

감리지적 사례 FSS/1912-26 :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

- 쟁점분야 : 유동성 분류
- 관련기준 :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
- 결정일 : 2019년
- 회계결산일 : 2016.12.31.

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는 X1년 6월과 X2년 5월에 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(put option)을 행사할 수 권리가 부여된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00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각각 발행하였다. A사는 X1년말 및 X2년말 현재 전환사채 등의 잔여 만기가 1년 이상임에 따라 상기 사채를 모두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였다.

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A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사채 만기일만을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음

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.
-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 등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할 경우 A사가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X1년말과 X2년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환사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.

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- ① 회계감사기준 500(감사증거)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,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. 또한 계속감사기간 동안 사채의 조기상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5. 시사점

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할 때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자본 및 부채 구분, 유동성 분류,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